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7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 장경태 · 민형배 · 김용민

문정복 • 김동아 • 부승찬

김승원 · 한민수 · 조계원

김문수 · 강준현 · 김현정

이재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 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종전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 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장치가 작동하는 긍정적 효 과가 기대됨.

반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수사권 행사의 책임 소재

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수사기관의 다원화·전문화로 인하여 국민이 자신들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할지,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기말을 제외한 정보의 접근성을 대폭 신장하는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 안번호 제10730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및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 하여 원활한 협력·조정을 도모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2장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 제3조(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 3.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 ③ 위원은 수사 및 사법제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수사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사법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다.

-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5조(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국무총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명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4. 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 5.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1명
 -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 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 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제10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제12조(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민주화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 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수사 민주화 소위원회에는 국민주권 전문위원회와 수사정보공개 전문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이하 "신청등"으로 한다)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피해자인 때
 - 2. 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3. 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4.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감정수탁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5.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6.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7.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 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8. 위원이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② 제26조의 이의신청인, 제27조의 사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등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항의 재적위원수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5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0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 등을 위한 수사 관련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 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선

- 2.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 ·조정
- 3. 국민이 자기와 관련된 수사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 신청 등 수사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 및 시행
- 4. 수사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보장 방안 연구 및 시행
- 5. 일반적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6.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정책 및 그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수사기관의 수사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 8.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 성 등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의 처리
- 9.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10.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 및 감찰요구
- 11.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12.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13.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입건 전 조사 및 송치 또는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적정성, 주요 수사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점 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의 제안

- 14.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감독
- 1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1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17.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 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 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 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방문점검)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송치 또는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적정성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문점검을 하는 위원, 직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점검을 받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점검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원등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담당 수사관은 위원등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수사관이 위원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원등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사건관계인 등은 위원등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⑥ 위원등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⑦ 그 밖에 방문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실태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 과 수사 실태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 총리와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

- 제25조(국가수사심의위원회) ① 각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수사위원회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같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게 재수사를 하게 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이첩의 경우에는 수사기관별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범위 내에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수사심의 신청 및 접수)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중수처·국수본·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하 "당해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등에서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명백히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있다.
 - ⑤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수사심의신청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심의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수사심의신청 사실의 위원회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제27조

- 에 따라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한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한다.
- 제29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등 처리)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하 "당해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등에서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④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수사심의신청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 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관한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수사관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 사
 - 4. 감정의 의뢰
 - 5.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③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직원이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관계 수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2조(질문·검사권)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제31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3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사심의신청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신청인 또는 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처리 결과 등의 통지 및 공개) 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및 관계 수사기관의 장에게 심 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②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처리 결과, 수사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수사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 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장 보칙

- 제35조(국민의 정보 접근권) ① 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인터넷 홈 페이지등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홈페이지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9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민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가로서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거나, 위원회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의견 제시한 전문가, 자문인,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람 등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40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6조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41조(자격 사칭)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방문점검 또는 제31조제2항제3 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 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최초 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2년임기 2명(위원장 포함), 3년임기 2명으로 각각 임명하며, 비상임 위원은 2년임기 3명, 3년임기 4명으로 각각 임명한다.
- 제4조(대통령령의 제정등)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